

사진기자를 위한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가이드

1985년 중반에 미국 연합통신사(AP)는 어떤 캘리포니아주 신문에 처음으로 인쇄되었던 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 사진은 물에 빠져 죽은 한 소년의 비통해 하는 가족과 그의 시체가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이 사진이 게재된 후에 신문사는 폭파위협과 독자들로부터 5백통 이상의 항의전화를 받았다. 그 신문사의 편집자가 말하기를 전화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 당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으며, 그 사진은 게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 하더라는 것이다. 또한, 독자들은 「신문사가 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그 소년에 대한 추억에 깊은 상처를 남겨 주었다」고 말했다.

몇 년 전에 코네티컷주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신문사의 사진기자가 4명의 10대들이 살해당한 사건현장에 도착하였다. 그가 찍은 사진 가운데, 운전수가 운전대의 뾰족한 부분에 찢려 죽어 있는 모습과 빈 맥주깡통으로 가득찬 뒷좌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었다. 편집자는 이 사진이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비통해 하는 가족에게 충격을 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운전수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말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본 후에 「그것을 인쇄하라, 그러면 다른 소년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어떤 신문은, 한 엄마와 딸이 나란히 학교를 향해 걷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는데, 사진설명서에 그들의 주소도 실렸다 그 후에 그 엄마는 1백 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낯선 이로부터의 추잡한 내용의 전화였다. 어떤 이들은 엄마나 딸을 만나기를 원하기조차 했다.

최근 어떤 인기가수의 경호원이 그 가수를 촬영하려는 사진기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의 필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그 경호원은 폭행과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나선 적이 있다.

뉴스보도에 있어서 사진의 효용은 그 위험성이 무엇이든 간에 대중들에게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최상의 이해를 주는 생명력 있는 한 영역이다. 사진은 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는데 필수적이며, 말이나 글로써는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준다. 올해 초에 오레곤주의 대법원은 「많은 예에 있어 사진은 틀림없이 발행인에게 수천단어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직업적 윤리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은 말썽 많은 사생활문제와 연관된 사진을 게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종종 영향을 미친다. 판단의 오류에 대한 결과는 그 결정을 내린 편집자와 사진기자의 양심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생활을 침해한 사진기자에 게는 법적인 결과가 훨씬 더 구체적인 방법의 대가를 치루게 할 수도 있다.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 사진기자들과 뉴스 매체들은 그 관할구역의법이 사생활문제에 관한 사진보도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와 뉴스보도 매체의 권리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중의 권익에 관한 수정헌법 제 1 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게재하고자 하는 사진의 내용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사생활권에 관한 사안이라면, 그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불법 행위란, 권리침해를 야기시키는 타인에 대한 민사상의 부당 행위이다. 부당행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깨뜨릴 때 일어나는 것이며, 이 경우에서의 의무란 다른 사람을 혼자 있게 해 주는 의무이다. 사생활침해는 범죄와 같이 처벌되지는 않지만 벌칙으로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이 될 수도 있다.

비교적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새로운 분야인 사생활의 권리는 본래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1)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진기자들은 촬영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간주되고 있다. 만일 사진기자가 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재정적 손해를 입히게 되면 사진기자와 언론사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사생활에 관한 법은 4 가지 차원에서 연구돼왔다. 즉 다른 사람의 은둔에 대한 부당한 침해,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대중에게 누설하는 것, 특정 개인을 대중에게 잘못 인식시키는 것, 상업적인 이들을 위해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하는 것 등이다. 거의 모든 주는 법원의 판결이나 법령에 의해 암시적으로나 또는 명백하게 최소한 한개 이상의 사생활침해에 관한 법을 인정해 왔다.2)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을 취급해 왔던 미국대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들로부터의 판례에서 입증된 각 형태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줄 것이다. 또한 사생활침해소송에 대한 몇 가지 방어책과 보호책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생활침해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에 대한 각 주의 승인여부를 보여주는 도표도 들어 있다

개인의 은둔에 대한 부당한 침해(Unreasonable intrusion into another's seclusion)

사진에 의해 다른 사람의 은둔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그 사진이 현장에서 찍어 진다거나, 사진촬영 상황이 합리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사적인 경우일 때 일어난다. 그 결과적인 침해가 비슷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람에게 심각한 공격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면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공공장소에서 행해진 사진촬영이 부당한 사생활침해가 되기는 힘들다. 축구경기에서 지퍼를 열어 놓은 채 뛰고 있는 한 스포츠 선수의 사진 3)은 실업자 대책소에 줄 서있는 사람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침해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4) 그러나 「유령의 집」에서 갑자기 옷이 말려져 올라간 어떤 여인에 대한 사진은 부당한 침해라고 밝혀졌다.5)

어떤 사람이 합리적인 사생활의 이유를 가질 때 그곳에서 행해진 사진촬영은, 사생활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병원 병실에서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찍은 뚱뚱한 여인의 사진은 기소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6) 비록 사생활 침해소송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더라도 어느 TV 기자는 최근에 보건법령을 어겼다고 판명될 한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도 그 사진을 찍음으로써 남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7) 일반적인 사생활침해 관계법을 가진 주 이외에도 어떤 주는 숨겨 놓은 카메라의 사용을 악행이라고 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법을 가지지 않은 어떤 주의 법원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돌팔이 의사가 비록 기자들을 자기집에 들어오라고 허용했더라도 숨긴 카메라와 녹음장치는 충분히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결 지었다.8) 그러나 다른 주의 한 법원은 마사지 미용실에서 비밀조사를 하는 경찰관리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숨겨 놓고 촬영한 것은 그 관리의 행동에 대한 공적인 관점 때문에 부당한 행동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9)

사사에 대한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개인에 대한 사적 정보의 공표는 비록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누설이 정당한 사람에게 심하게 충격적이라면 불리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도 그런 정보가 뉴스의 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콕스 방송국 대 콘(Cox Broadcasting Corp.v. Cohn)의 사건 10)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진실을 공표한 결과가 처벌을 야기시키므로 사사의 공표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정면으로 직면하는 사생활권리 주장의 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대법원은, 한 강간피살자의 아버지가 TV 방송국이 조오지아주의 법령을 어기면서 그의 딸의 이름을 공표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 이름이 열람이 가능한 법원서류에 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정보공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보도매체 자체 내의 검열을 야기시킬 것이며, 이는 수정헌법 제 1 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되었다.

사진을 찍힌 사랑의 사생활권리에 대한 투쟁은 법률시행(law-enforcement)과 공공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법원은 혐의가 있어 체포된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뉴스의 가치가 있으므로, 사생활권리 주장은 할 수 없다고 했다.¹¹⁾ 비법률적인 시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실상 목격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촬영은 개인적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될 수 없다고 주장된다. 그러므로 법원들은 시장에서 서로 포용하고 있는 남녀 한 쌍의 사진¹²⁾과 법정에서의 어느 피고에 대한 사진은 둘 다 소송제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¹³⁾

올해 초, 오레곤주 대법원은, 어떤 사건의 희생자가 자신이 「비상의학치료」(emergency medical care)¹⁴⁾에 관한 특집방송의 안내광고에 들어 있는 어떤 테이프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법원은 사기나 감정적인 고통을 일부러 야기시키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아무리 뉴스성 없는 개인적 사실이라도 진실을 보도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줌(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출판물이 어느 개인을 잘못된 견지에서 묘사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은 그 대상자의 명성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비슷한 것이다. 출판물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상처를 야기시킬 것이며, 정당한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것이 될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타임사 대 힐(Time Inc. v. Hill) 사건¹⁵⁾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대중에게 잘못 인식되어졌다고 느끼는 원고는 언론사측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출한 죄수들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던 힐씨 가족의 사건에 대해서, 소설적인 극화로 엮은 라이프지(Life) 사진에세이도 이 사례에 포함되었다 법원은, 힐씨 가족이 그 사진에세이가 잘못된 묘사이며, 진실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규정 지었다.

몇 년 후, 다른 상황에 근거해서 연방대법원은 어느 신문이 다리가 무너졌을 때, 죽은 한 남자의 가족을 잘못된 입장에 빠뜨렸다고 규정 지었다.¹⁶⁾ 그 사진과 관계기사는 그 가족이 빈곤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모욕과 동정 속에 빠뜨린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 해의 초기에 명예훼손소송에서 밝혔던 것같이 사생활침해소송에서도 언론보도에 태만과 부주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사진 그 자체가 대상을 잘못 된 입장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해설이라든지 그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기사의 구절이 그 사람을 잘못 된 입장에 빠뜨린다. 그러므로 두 명의 누드모델의 사진설명에서 그들을 동성연애자라로 묘사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규정되었다.17) 그리고 정직한 택시운전사의 사진과 함께 실은 정직하지 못한 운전수들에 관한 기사는 소송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었다.18) 다른 한편으로 어떤 법원은 어느 직장인이 그의 친구와 함께 실업자들 대열에 끼여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데 대한 소송에서 그 사진 촬영은 사생활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법원은 신문사측에게 과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그 사진은 공적인 장소에서 찍혀진 것이라고 말했다.19)

사진이나 초상의 도용(Misappropriation of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첫번째 형태는 허가 없이 남의 이름이나 초상을 도용한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법으로 성문화되어 온 것이다. 유명 인사들이 자신에 대한 보도에 대해 간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도용에 대한 사례가 광고구문에서 일어났다. 어느 법원은 재클린 오나시스 여사를 닮은 모델을 광고에 사용한 것은 오나시스의 명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20) 그러나 잡지판매광고에 있어 유명인사 사진을 담은 잡지표지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소송제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되어 왔다.21)

미연방대법원은 자키니 대 스크링스 호워드방송국(Zacchini v. Scripps-Howard)사건 22)에서 짧은 뉴스 보도 속에 도용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인간포탄(human cannonball)에 관한 15 초 동안의 행동을 전부 보여주고 있는 뉴스방송은, 인간포탄 주인공이 자신에 관한 보도에 간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법원의 이 판결은, 비상업적 뉴스보도에서의 초상의 도용문제를 다룬 것이지, 자신의 모습이 보도되는 화면의 방송시간과 양을 줄일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 보도에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도용이라는 소송이 계속 증가 발생해왔다. 앞에서 언급했던 두 명의 누드모델을 포함한 사례가 도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허슬러(Hustler)지가 여배우 로빈 더글러스씨의 사진을 그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인쇄하였기 때문이다.23) 그 사진들은 종전의 플레이보이 (Playboy)지에 나왔던 사진과 같은 기간에 찍혀진 것들이다. 법원은 허슬러지가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고 싶은 출판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녀의 권리를 빼앗음으로써, 그녀가 자기마음대로 자신을 선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허슬러지가 더글러스양이 출연한 어느 영화필름에서 빼낸 스틸 사진들을 게재한 것은 도용이 아니라고 규정 지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배우가 간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배우 앤 마가렛이 관련된 사례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24)

다른 법원은 「싸게 산 물건」란에 어느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은, 비록 그 기사가 그 옷들을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위장된 광고」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 지었다. 법원은 독자들이 패션뉴스에 관해 합법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그 사진과 안내문은 뉴스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5)

도용에 관한 주법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도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동이 재정적인 이득을 초래했을 때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도용에 관한 법보다는 상법에 의존하는 몇몇 주에서는 도용을 상업적 이득과는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판결하려 해왔다. 예를 들어 어느 법원에서는 예비 학생들에게 배포될 책의 표지에 어느 학생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고 판결 내렸다.26)

사생활침해소송에 대한 미연방지책(Defenses to privacy claims)

몇몇 상황은 사진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묵살할 수도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생활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합법적인 사생활장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범죄나 대형사고와 같은 뉴스성 있는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제약성이 없다. 대상자가 사생활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사진을 찍고 게재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사전승낙은 사생활침해 소송에 대한 방어책이다. 그러나 사전승낙은 보도대상자의 공적 유명도에 따라 묵인될 수도 있다 가렐라 대 오나시스(Galella v. Onassis) 사건 27)에서 처럼, 어느 개인은 공익적 차원에서의 보도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에 있어 사진 촬영자는 사진을 찍기 위해 뛰어 넘어다니고, 재클린 여사에게 접근할 기회를 잡기위해 수위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재클린 여사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사전승낙의 범위를 초과했다. 그러나, 사전승낙서가 필요할 때는 사진을 찍고 게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할 만큼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병원의 뚱뚱한 여자의 사진에 대한 사례를 기억해 보자. 그녀는 인터뷰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인터뷰가 끝날 즈음에, 기자가 그녀의 사진을 찍는데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동료가 사진을 찍었다. 그 후 그 사진 게재는 그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면책대상이 되지 못했다.28)

미연방대법원은 사생활 왜곡에 대한 소송은 명예훼손의 경우처럼, 원고가 그 기사는 거짓이며, 현실적 악의를 갖고 게재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사진이 왜곡된 기사내용 가운데 포함되었을 때, 사진기자는, 거기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믿을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생활에 관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진을 찍고, 게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진기자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주 안에서도, 서로 다른 많은 법원들이 사생활의 여러 형태 가운데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주어진 사례의 여러 가지 사실들도 법원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법의 일반적인 경향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생활침해에 대해 보다 넓게 인정해주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변호사나 기자협회와 상의하는 것도 의문점을 풀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도에 의한 사생활침해를 줄이는 대책

사진을 찍고 게재하는 데 있어 법에 대한 지식은 사생활침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별력은, 사진기자와 출판물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과 독자에게 이익을 주는 좋은 뉴스사진과의 차이점을 깨닫게 해주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진기자들은 사진을 찍거나 게재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법적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사적인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사전승낙을 요한다.

○ 사전동의를 필요하다면, 그 동의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얻어져야 한다. 어린이나 정신박약자로부터 얻은 동의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차용자는 전세 낸 부분을 제외한 어느 장소에서도 사진을 찍게 할 권한이 없다.

○ 특정인의 집에 대한 출입허가가 사진을 촬영해도 된다는 승인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승낙기준을 초과한 행위는 전혀 승인 받지 않은 상태와 같다

○ 공공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은 그 사진설명 때문에 오도될 수 있다(예를 들어, 사진에 찍혀진 모든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가 무주택자라고 묘사한 경우). 또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수한 사진현상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즉, 채료분무법(airbrushing), 음영표출법(shadowing), 또는 특수조명법(special lighting) 등이 가능한 해결책이다.

○ 경찰이나 소방관들로부터, 범죄현장과 같은 개인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허가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 주법원들은 다른 판결을 내려왔다. 어떤 경우든, 당국으로부터 허가가 없으면 사진기는 데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 구두승낙은, 일반적으로 그 촬영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해 줄 수도 있지만, 서면승낙이 소송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어떤 주에서는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서면승낙이 필요하기도 하다

○ 공공관리나 공익과 관계된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사인들보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훨씬 적다.

○ 숨긴 카메라의 사용은 불법이 될 수 있다. 어떤 주는 그것을 범죄로 규정한 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 어떤 주에서는, 사진촬영 그 자체를 사생활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사진게재가 필요하지가 않다.

○ 법이란 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어떤 주에서는 병원들간의 갈등도 있다. 의심스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언론사의 고문번호사나 기자연합회(Reporters Committee)에 거는 전화 한 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The News Media & The Law 지 1986년 여름호)

<주>

1) Cooley, Torts, 2d Ed., p.29(1888).

2) 일반적으로, 사생활보호 관계법을 가진 주들은, 그 법을 단순히 다른 주의 법원결정으로부터 끌어 들여 조문화 해왔다. 이는, 자주 사생활침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결정적인 법을 명료화 하기를 꺼리는 주법원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어느 경우에서나 그 법은 사생활보호 관계법을 가지지 않은 주의 경우에서처럼 원칙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다.

3) Neff v. Time, 406 F.Supp. 858(W.D.Pa.1976) .

4) Cefalu v Globe Newspaper Co., 391 N.E. 2d935(Mass. APP. Ct. 1979)

5) Daily Times Democrat v. Graham, 162 So. 2d474 (Ala . 1964).

6) Barber v. Time, 159 S. W. 2d 291(Mo. 1942)

7) Le Mistral v. CBS, 402 N.Y.S. 2d 815(1st Dep't 1978).

8) Dietemann v. Time Inc., 449 F. 2d 245(9thCir. 1971).

9) Cassidy v. ABC, 377 N.E 2d 126(III. APP. Ct 1978) .

10) 420 U.S. 469(1975).

11) Williams v. KCMO Broadcasting Div-Meredith Corp., 472 S.W. 2d 1(Mo. Ct. App. 1971).

12) Gill v. Hearst Publishing Co., 253 p. 2d441 (Calif. 1953).

13) Berg v. Minneapolis Star & Tribune Co., 79F Supp. 957(D. Minn. 1948).

14) Anderson v. Fisher Broadcasting Companies, Inc., 12 Med L. Rptr. 1604(Ore. 1986).

15) 385 U.S. 374(1967).

- 16) Cantrell v. Forest City Publishing Co., 419 U.S. 245(1974).
- 17) Douglass v Hustler Magazine, Inc., 769 F. 2d 1128(7th Cir. 1985), cert, denied, 54 U.S.L.W3647(U.S. 85862) (March 31, 1986).
- 18) Peay v, Curtis Publishing Co., 78 F. Supp.305(D.D.C. 1948).
- 19) Cefalu v. Globe Newspaper Co., supra.
- 20) Onassis v. Christian Dior, 472 N.Y.S. 2d254(Sup. Ct., N.Y. County 1984).
- 21) Naimath v Sports Illustrated, 48 A.D 2d 487,1 Med. L. Rptr. 1843(1st Dep't 1975).
- 22) 433 U.S. 562(1977).
- 23) Douglass v. Hustler Magazine, Inc., supra.
- 24) Ann Margret v. High Society, 498 F.Supp.401(S.D.N.Y. 1980).
- 25) Stephano v. News Group Publicaions, 64 NY.S 2d 174(1st Dep't 1984).
- 26) Spellman v. Simon & Schuster, 3 Med. LRptr.(Sup Ct., N Y. County 1978)
- 27) 487 F. 2d 896(2nd Cir. 1973).
- 28) Barber v. Time, Inc., supra.